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2. 1. 28.>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기점(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지역명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과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